



1 제5조 (사업주 의무)

-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유지·증진
 - 산업재해예방 기준 준수
 -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
 -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
-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따라야 함

2 제10조 (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)

-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,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(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)

3 제12조 (안전·보건표지의 부착)

-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안전·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여야 함
 -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
 -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
 - 안전의식 고취

4 제23조 (안전조치)

- 사업주는 아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① 기계·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, ② 폭발성,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, ③ 전기, 열,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
 - 굴착, 채석, 하역, 벌목, 운송, 조작, 운반, 해체,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
 - ① 추락할 위험 장소, ② 토사,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,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, ④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

5 제24조 (보건조치)

- 사업주는 아래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흙, 미스트, 산소결핍,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
 - 방사선, 유해광선, 고온, 저온, 초음파, 소음,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
 -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계,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
 - 계측감시, 컴퓨터 단말기 조작,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
 -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
 - 환기, 채광, 조명, 보온, 방습,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

6 제31조(안전·보건교육)

-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
 - 정기교육 : 사무직·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(매 분기 3시간 이상)
사무직·판매 업무 종사 근로자 외(매 분기 6시간 이상)
 - 채용시 교육 : 8시간 이상
 -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: 2시간 이상
 - 특별교육 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근로자에 대해 16시간 이상

7 제33조 (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등의 방호조치)

- 유해·위험 작업이 필요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·기구의 경우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·기구 및 방호조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
 - 예초기 : 날 접촉 예방장치
 - 원심기 :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
 - 공기압축기 : 압력방출장치
 - 지게차 : 헤드가드, 백레스트, 전조등, 후미등, 안전벨트
 - 포장기계 :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
 - 작동부분 들기 : 문힘형 또는 덮개부착
 - 동력전달 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 :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
 - 회전기계 물림점(롤러, 기어 등) : 덮개 또는 울 설치
- ※ 방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, 양도, 대여, 설치, 사용 하거나 양도, 대여 목적으로 진열 금지

8 제41조 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·비치)

-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·제공
- 화학물질 취급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질안전 보건자료 게시·비치
- 화학물질을 양도·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
- ① 화학물질 제조·사용·운반·저장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, ②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, ③ 유해성·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

9 제42조 (작업환경측정)

- 소음, 분진,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(191종)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경우 건강보호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실시(1회/6개월)
-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해당 시설·설비의 설치·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

10 제43조 (건강진단)

-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
 - 일반건강진단 : 모든 근로자(사무직 : 1회/2년, 그 밖의 근로자 : 1회/년)
 - 특수건강진단 : 화학물질, 소음, 분진,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(179종)에 노출 되는 근로자
 - 배치 전 건강진단 :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되는 근로자
- 검진 결과 건강이상자(유소견자)에 대해 작업장소 변경, 근로시간 단축, 시설·설비의 설치·개선 등 건강보호조치 이행

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

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

* 작업 근로자들은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자에게 보고, 의사 진료 및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
1

사업주는 **작업 전 안전점검**을 하도록 하고,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**정리정돈** 해야 합니다.



6

사업주는 **유해·위험 화학물질**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**경고 표지**를 부착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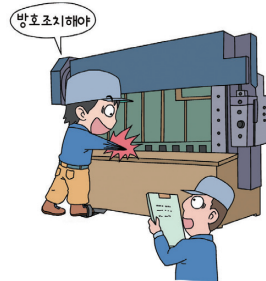
2

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**안전통로**를 확보해야 합니다.



7

사업주는 프레스, 전단기, 압력 용기 등 **유해 위험 기계·기구**를 사용할 때에는 적합한 **방호장치**를 설치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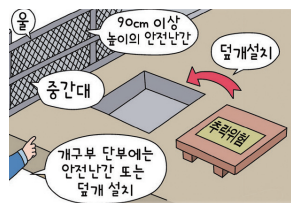
3

사업주는 작업에 적합한 **개인 보호구**를 **지급**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**착용**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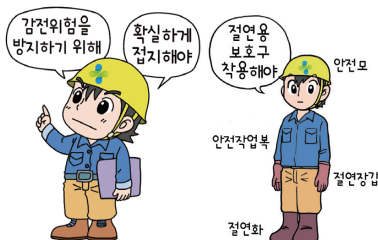
8

사업주는 근로자가 **추락**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**안전 난간**, **개구부 덮개**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



4

사업주는 전기작업 시 **접지**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**절연용 보호구**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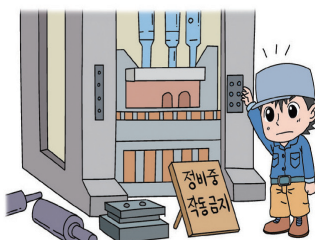
9

사업주는 금속의 **용접·용단** 등의 작업 시 **인화성 폭발성 물질**을 **격리**해야 합니다.



5

사업주는 기계·설비 정비시 기동 장치에 **잠금장치**를 하고 **표지판**을 부착해야 합니다.



10

사업주는 근로자가 **밀폐공간**에서 작업하는 경우 **작업 전·작업 중 산소농도** 등을 측정해야 합니다.

